

부천시의회의회정자문위원운영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제99호
의결 년월일	2002.9.10 (제99회)

제안년월일 : 2002년 9월 6일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주 문

부천시의회의회정자문위원운영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을 별첨과 같이 개정한다.

제안이유

- 부천시의회의회정자문위원운영조례 개정에 따라 세부적인 시행 사항인 규칙개정

주요골자

- 자문위원수당 지급에 따른 근무일수 기준 마련(안 제5조)
- 연구·검토 지시서에 의거 연구승인을 받은 자문위원이 사정에 의거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의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

개정규칙안 : 별첨

관계법령 발췌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 사항 : 자문위원수당

사전예고결과 : 해당없음.

기타참고사항 : 해당없음

부천시의회규칙 제 호

부천시의회의회정자문위원운영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

부천시의회의회정자문위원운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- ④자문위원의 근무일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제6조 내지 제9조를 제7조 내지 제10조로 하고,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연구계획의 변경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연구·검토지시서에 의거 연구승인을 받은 자문위원이 사정의 변경 등으로 부득이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의장은 연구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자문위원의 수당을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할 수 있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수당등) ①~③(생략) 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5조(수당등) ①~③(현행과 같음) <u>④자문위원의 근무일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.</u></p> <p>제6조(연구계획의 변경) ①연구·검토지시서에 의거 연구승인을 받은 자문위원이 사정의 변경 등으로 부득이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②의장은 연구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자문위원의 수당을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할 수 있다.</p>
<p>제6조(위촉관련 구비서류) (생략)</p>	<p>제7조(위촉관련 구비서류)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책임완수) (생략)</p>	<p>제8조(책임완수)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연락체계의 유지) (생략)</p>	<p>제9조(연락체계의 유지)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출장) (생략)</p>	<p>제10조(출장) (현행과 같음)</p>

〈별표1〉

의정자문위원의 근무일수 인정기준<제5조 관련>

항 목	인정일수	비 고
○ 의장이 부여한 과제에 대한 연구	연구(검토)지시서에 명시한 기간	
○ 의정자문 위원이 스스로 발의한 과제에 대한 연구	연구승인서에 명시한 기간	
○ 의원과 합동으로 팀을 구성하여 연구업무 수행	연구(검토)지시서 또는 연구승인서에 명시한 기간	
○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대안의 개발	연구(검토)지시서에 명시한 기간	
○ 각종 보고회, 세미나, 회의 등 참석	1일	동일한 날 2이상의 회의등에 참석하였을 경우 1일만 인정